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6. 12.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12년 5월 31일
- 나. 발 의 자 : 신흥식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 2012년 6월 4일
- 라. 상정일자 : 제167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2012년 6월 11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신흥식 의원)

### 가. 제안이유

- 구와 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의 위원 수와 임원구성을 정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구와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수 및 임원구성 정비
  - 구청소년지도협의회
    -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으로 변경(안 제19조제2항)
  - 동청소년지도협의회
    - 지도위원 20명 이내 ⇒ 지도위원 25명 이내
    -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 ⇒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1명, 총무 1명으로 변경(안 제19조제3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성)

- 본 개정조례안은 구와 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을 보완 정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구와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수 및 임원구성을 정비하는 것으로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에서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으로 변경하고,
  
  -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별 지도위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증원하고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에서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1명, 총무 1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청소년기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에 유익한 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협의회의 지도위원 증원과 임원구성을 보완·정비하여 조직을 체계화함으로써 단체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수정안 요지

### 가. 수정이유

- 청소년지도협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조직의 자율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 골자

- 안 제 19 조 제 2 항 중  
“ 부회장 3명 ” 을 “ 부회장 3명 이내 ” 로 하고,
- 같은 조 제 3 항 중  
“ 25명 ” 을 “ 30명 ” 으로,  
“ 부회장 3명 ” 을 “ 부회장 3명 이내 ” 로,  
“ 호선한다 ” 를 “ 호선하고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 로 함.

##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0호
----------	------------

제안년월일 : 2012. 6.

제출자 : 이재형 위원 외 1명

## 1. 수정이유

- 청소년지도협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조직의 자율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안 제 19 조 제 2 항 중

“ 부회장 3명 ” 을 “ 부회장 3명 이내 ” 로 하고,

- 같은 조 제 3 항 중

“ 25명 ” 을 “ 30명 ” 으로,

“ 부회장 3명 ” 을 “ 부회장 3명 이내 ” 로,

“ 호선한다 ” 를 “ 호선하고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 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 19 조 제 2 항 중

“ 부회장 3명 ” 을 “ 부회장 3명 이내 ” 로 하고,

○ 같은 조 제 3 항 중

“ 25명 ” 을 “ 30명 ” 으로,

“ 부회장 3명 ” 을 “ 부회장 3명 이내 ” 로,

“ 호선한다 ” 를 “ 호선하고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b>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b></p> <p>① (생략)</p> <p>② ----- ----- <u>부회장 3명</u> ----- -----.</p> <p>③ ----- <u>25명</u> ----- ----- ----- <u>부회장 3명</u> ----- ----- <u>호선한다.</u></p>	<p><b>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b></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u>부회장 3명 이내</u>, ----- -----.</p> <p>③ ----- <u>30명</u> ----- ----- ----- <u>부회장 3명 이내</u> ----- ----- <u>호선하고</u> <u>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u> <u>당연직 고문으로 한다.</u></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0
----------	-----

발의연월일 : 2012년 5월 일  
발 의 자 : 신흥식의원 외 5명

## 1. 제안이유

구와 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의 위원 수와 임원구성을 정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구와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수 및 임원구성 정비

- 구청소년지도협의회

·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으로 변경(안 제19조제2항)

- 동청소년지도협의회

· 지도위원 20명 이내 ⇒ 지도위원 25명 이내

·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 ⇒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1명,  
총무 1명으로 변경(안 제19조제3항)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결과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관계법령”을 “청소년 관계 법령”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한다.

제2조 중 “청소년관계법령”을 “청소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3조 중 “청소년관계법령”을 “청소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같은 조 제2호 중 “관계행정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자”를 “사람”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관련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중·고등·대학생인”을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인”으로 한다.



제16조 중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를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17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기타경비”를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부회장 2명, 총무 1명”을 “부회장 3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1명, 총무 1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관할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관할 동장”을 “관할 동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같은 조 3호, 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5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0조 중 “모집함”을 “모집”으로 한다.

제32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같은 조 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의”를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로,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안의”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로, “적정한”을 “적절한”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관할경찰서”를 “관할 경찰서”로,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청취하여야”를 “들어야”로 한다.

제41조 중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구역 안에서”를 “구역에서”로, 같은 조 제2항 중 “구역내에”를 “구역에”로,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5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1호서식에”를 “제1호 서식에”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u>	제명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과 「청소년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등 <u>청소년관계법령</u>에 따라 <u>서울특별시영등포구</u>(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청소년 관계 법령</u>에 따라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 -----.</p>
<p>제2조(구의 책무) 구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u>청소년관계법령</u>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p>	<p>제2조(구의 책무) ----- ----- ----- <u>청소년 관계 법령</u>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p>
<p>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기본법과 보호법 등 <u>청소년관계법령</u>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청소년정책 수립·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p>	<p>제3조(구민의 협력) ----- <u>청소년 관계 법령</u> ----- -----.</p>
<p>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p>	<p>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u>----- -----.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청소년의 달) 구청장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청소년의 달) ----- ----- ----- <u>범위</u> ----- -----.</p>

<p>1. ~ 5. (생 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7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육성위원회</u>(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p> <p>1. (생 략)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u>관계행정기관</u>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 7. (생 략)</p>	<p>제7조(설치 및 기능)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u>-----.</p> <p>1. (현행과 같음) 2. ----- <u>관계 행정기관</u> ----- ----- 3. ~ 7.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청소년단체, 구 직능단체, <u>관계기관</u>(교육청 및 경찰서 등)에서 추천한 자 3.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청소년 <u>관련기관</u>의 공무원</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u>관계 기관</u> ----- ----- <u>사람</u> ----- 3. ----- ----- <u>사람</u> ----- 4. ----- <u>관련 기관</u> -----</p>
<p>제14조(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19세 미만의 <u>중·고등·대학생인</u>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p>제14조(청소년 회의 개최) ----- ----- <u>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인</u> ----- -----.</p>
<p>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u>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u>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16조(의견청취 등) ----- ----- <u>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u> ----- -----.</p>
<p>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u>기타경비</u>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p>	<p>제17조(수당 등) ----- ----- <u>대해서는</u> ----- <u>범위</u>----- -----<u>그 밖의 경비</u>----- -----</p>

<p>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p>
<p>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으로 한다. ③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으로 하되 지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회장 3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③ ----- 25명 ----- -----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1명, 총무 1명 -----.</p>
<p>제20조(지도위원의 위·해촉) ①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경찰관서장,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생략)</p>	<p>제20조(지도위원의 위·해촉) ① ----- -----사람, ----- ----- 관할 지역----- ----- 관할 동장-----. 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2. (생략)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 등</p>	<p>제22조(결격사유) ----- 사람은 -----. 1. 2. (현행과 같음) 3. ----- 사람 4. ----- ----- 사람 ---</p>
<p>제25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25조(필요경비 등 지원) ----- ----- ----- 범위----- -----.</p>
<p>제30조(수탁자 선정)</p>	<p>제30조(수탁자 선정)</p>

<p>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 <u>모집합</u>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lt;개정 2011.12.29&gt;</p> <p>② (생략)</p>	<p>① ----- <u>모집</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2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구관할구역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32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 ----- ----- ----- ----- ----- ----- <u>범위</u> ----- -----.</p>
<p>제33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생략) ② 구청장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모범 청소년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1. ~ 4. (생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33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범위</u> ----- -----.</p> <p>③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 <u>사람</u></p>
<p>제36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6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대해서는</u> ----- <u>범위</u> ----- -----.</p>
<p>제39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u>청소년통행금지구역</u> 안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p>	<p>제39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u>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u> ----- ----- -----</p>

<p>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p> <p>② <u>청소년통행제한구역</u> 안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u>적절한</u>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p>	<p>----- -----.</p> <p>② <u>청소년통행제한구역</u>의 ----- ----- ----- <u>적절한</u> ----- ----- -----.</p>
<p>제40조(지정절차)</p> <p>① <u>청소년통행금지구역</u>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 등을 통하여 <u>관할경찰서</u>, 학교 등의 <u>관계기관</u>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u>청취</u>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0조(지정절차)</p> <p>① ----- ----- ----- <u>관할 경찰서</u> ----- <u>관계 기관</u> ----- <u>들어야</u>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1조(지정해제)</p> <p><u>청소년 통행금지구역</u>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u>청소년 통행금지구역</u>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p>	<p>제41조(지정해제)</p> <p><u>청소년통행금지구역</u> ----- ----- <u>청소년통행금지구역</u> ----- ----- <u>경우에는</u> ----- -----.</p>
<p>제43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p> <p>① 해당 <u>구역</u> 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u>구역내</u>에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p> <p>③ 구청장은 <u>청소년통행금지구역</u>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u>소요경비</u> 등을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43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p> <p>① ----- <u>구역에서</u> ----- -----.</p> <p>② ----- ----- <u>구역에</u> -----.</p> <p>③ ----- <u>범위</u> ----- -----.</p>

<p>제45조(신고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보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청소  년유해환경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u>범위 안</u>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45조(신고포상금 지급)  -----  -----범위-----  -----.</p>
<p>제47조(신고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  한 해당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7조(신고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호 서식에 -----  -----  -----.</p>
<p>제50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2의 지급기준으로 하고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지급한다.  ② (생략)</p>	<p>제50조(지급방법)  ① -----  ----- 범위  -----.  ② (현행과 같음)</p>